

PCT NEWSLETTER

www.wipo.int/pct/ko

2020년 4월 | 2020/04 호

코로나 19 관련 PCT 웨비나(Webinar) 동영상 강의 추가 안내

아래 주제에 대한 한국어 동영상 및 강의 자료가 추가되었습니다.

- 코로나 19 보건 위기가 PCT 에 미치는 영향

이번 자료에는 코로나 19 보건 위기와 관련하여, PCT 업무 현황 및 팬데믹으로 인해 제출할 서류나 수수료 등의 기한을 놓친 경우 가능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웨비나와 기존 한국어 웨비나 동영상 및 강의 자료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

* WIPO 에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이므로, 위 강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은 한국 특허청이 아닌 해당 발표자료에 안내된 연락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WIPO 의 PCT 웨비나 일반에 대한 문의는 pct.training@wipo.int 로 보내시면 됩니다.

PCT 뉴스레터 한국어판은 영문판(www.wipo.int/pct/en/newslett) 중 한국어 사용자 분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영문판에서만 제공되는 정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고,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경우 영문 원본을 참조하십시오. 영문판과 한국어판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판에 기재된 사항이 우선합니다.

<https://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국제사무국, 코로나 19 팬데믹이 PCT 규정에 따른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석

국제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코로나 19 팬데믹과 관련한 해석에 대한 성명과 PCT 관행에 대한 변경 권고사항을 내놓았습니다.

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9.html (한국어)

해당 성명은 국제사무국의 견해상 코로나 19 로 인한 팬데믹이 특허협력조약(PCT) 규칙 82 의 4.1 의 면책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위 규칙은 불가항력의 사유("전쟁, 혁명, 시민

소요, 파업, 천재지변, ... 또는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해 PCT 기한(서류 제출 및/또는 수수료 납부 등과 관련)을 지키지 못한 책임의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의 입장은 현 팬데믹을 "천재지변, ... 또는 기타 유사한 사유"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RO/IB)을 비롯한 WIPO 국제사무국은 코로나 19 관련 문제를 이유로 한 모든 PCT 규칙 82 의 4 신청을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취급할 것이며, 바이러스가 이해 당사자의 거주지, 영업소 혹은 체류지가 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사무국은 또한 PCT 관청들과 기관들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PCT 규칙 82 의 4.1 이 효과적인 구제책이 되지 못하는 경우 중 하나는, (정해진 기한 내에 적정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PCT 조약 제 14 조(3)(a)) 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선언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해당 국제출원이 법적 효력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국제사무국의 수리관청은 그러한 모든 통지서(서식 PCT/RO/117)의 발급을 2020 년 5 월 31 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으며, WIPO 국제사무국은 모든 PCT 수리관청이 이와 같은 관행을 채택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WIPO 국제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는 바입니다.

- 적어도 한 달(이 기간은 추가로 연장 가능)은 더, 위 언급된 통지서를 만료 시점이 2 개월 이상 지난 기한과 관련해서만 발급할 것
- 수리관청이 PCT 규칙 16 의 2.2 에 따른 가산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

코로나 19 팬데믹이 국제사무국의 PCT 출원 처리에 미치는 영향

PCT 뉴스레터 2020/03 호에 안내된 바와 같이, 국제사무국(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 포함)은 평소와 같이 운영됩니다. 다만,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우편 시스템이 불안정한 관계로, 국제사무국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우편을 통한 통신을 모두 중단한 상태입니다. 현재 국제사무국은 모든 PCT 관련 문서를 오직 이메일로, 각 국제출원에 대해 제공된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PCT 관련 문서는 이메일 외에 ePCT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출원이 공개되면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PATENTSCOPE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나 대리인이 PCT 출원에 연락용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PCT 사용자께서는 계속 중에 있는 본인의 국제출원에 대한 연락용 이메일 주소를 하루빨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무국에서는 이러한 경우의 연락용 이메일 주소 제출 방법을 자세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8.html (한국어)

모든 PCT 사용자께서는 PCT 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적절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만 국제사무국과 통신하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본 호의 "유용한 도움말"에 나온, PCT 관련 문서의 서면 송부 및 수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가 내용과, 지난 PCT 뉴스레터 2020/03 호의 "유용한 도움말"에 나온,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PCT 에 따른 기한을 놓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해결책에 관한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PCT 규칙 82 의 4.1 의 규정에 따른 기간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는 국제사무국의 해석에 관한 내용은 상기 별도의 단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IP 관청들에 관한 내용은 아래 "이례적 IP 관청 휴무일" 단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년 PCT 국제출원

2019 년에도 PCT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265,800 건¹에 달하는 기록적 수준의 PCT 출원이 이루어지면서 2018 년 대비 5.2%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58,990 건의 출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미국을 앞질러 최다 출원국에 등극했습니다. 미국은 1978 년 PCT 운영이 시작된 이후로 줄곧 PCT 시스템 최대 사용자의 자리에 있었으나 올해에는 57,840 건의 출원을 기록하며 2 위에 머물렀습니다.

프란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은 2019 년도 PCT 통계가 발표되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WIPO 를 통한 최다 국제특허출원국으로 급성장한 것은 혁신의 중심의 동쪽을 향한 장기적인 이동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시아 소재 출원인들이 전체 PCT 출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9 년에 WIPO 에 접수된 중국의 출원은 276 건이었습니다. 2019 년 해당 수치는 58,990 으로 증가했습니다. 불과 20 년 만에 200 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보도자료 PR/2020/848)

2018 년과 마찬가지로 일본(52,660 건), 독일(19,353 건), 대한민국(19,085 건)이 각각 3 위, 4 위, 5 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소재 출원인들이 2019 년 전체 PCT 출원의 52.4%를 차지했으며, 유럽은 23.2%, 북미는 22.8%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10 개 국가별 출원 총계 및 전체출원 대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	58,990 건	22.2%
2. 미국	57,840 건	21.8%
3. 일본	52,660 건	19.8%
4. 독일	19,353 건	7.3%
5. 대한민국	19,085 건	7.2%
6. 프랑스	7,934 건	3.0%
7. 영국	5,786 건	2.2%
8. 스위스	4,610 건	1.7%
9. 스웨덴	4,185 건	1.6%
10. 네덜란드	4,011 건	1.5%

¹ 2019 년 국내관청 및 지역관청에 제출된 PCT 출원이 모두 국제사무국에 접수되지는 않았기에, 해당 총계와 하기 수치들은 잠정적인 값이며, 최종 수치들은 올해 중 추후에야 확인 가능.

상위 15 개 국가들 중 2019 년 두자리수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한 곳은 터키(+46.7%), 대한민국(+12.8%), 캐나다(+12.2%), 중국(+10.6%)입니다. 터키는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처음으로 상위 15 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상위 15 개 국가들 중 독일(-2%)과 네덜란드(-3%) 두 국가만 출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국가들의 출원 건수와 2018 년 출원 대비 증감에 대한 내용은 아래 WIPO 보도자료 PR/2020/848 에 나온 부속서 1 을 참조하십시오.

www.wipo.int/pressroom/en/articles/2020/article_0005.html

중국 통신업체인 화웨이 테크놀러지는 2019 년 4,411 건의 공개출원을 기록하며 3 년 연속 최다 출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쓰비시 전기 주식회사(일본), 삼성전자주식회사(대한민국), 퀄컴(미국), 광둥 오포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즈(중국)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 10 위권 출원인들과 2019 년 해당 출원인들의 이름으로 공개된 PCT 출원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 | |
|---|---------|
| 1. 화웨이 테크놀러지 컴퍼니 리미티드(Huawei Technologies Co. Ltd, 중국) | 4,411 건 |
| 2. 미쓰비시 전기 주식회사(Mitsubishi Electric Corporation, 일본) | 2,661 건 |
| 3. 삼성전자주식회사(Samsung Electronics Co., Ltd, 대한민국) | 2,334 건 |
| 4.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ualcomm Incorporated, 미국) | 2,127 건 |
| 5. 광둥 오포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 리미티드(Guang Dong Oppo Mobile Telecommunications Corp., Ltd, 중국) | 1,927 건 |
| 6. BOE 테크놀로지 그룹 컴퍼니 리미티드(BOE Technology Group Co., Ltd, 중국) | 1,864 건 |
| 7. 주식회사 에릭슨(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Publ), 스웨덴) | 1,698 건 |
| 8. 핑안 테크놀로지 (선전) 컴퍼니 리미티드(Ping An Technology (Shenzhen) Co., Ltd, 중국) | 1,691 건 |
| 9. 로버트 보쉬 코퍼레이션(Robert Bosch Corporation, 독일) | 1,687 건 |
| 10. 엘지전자 주식회사(LG Electronics Inc., 대한민국) | 1,646 건 |

상위 10 위 출원인 중 여섯은 주로 디지털 통신 분야에서 출원했는데, 에릭슨, 광둥 오포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즈, 화웨이 테크놀러지, 엘지전자, 삼성전자, 퀄컴이 이에 포함됩니다. 상위 50 위 PCT 출원인 목록은 상기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부속서 2). 교육기관의 출원을 살펴보면, 캘리포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가 470 건의 공개출원으로 1993 년부터 계속해서 PCT 시스템 최대 사용자의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상위 10 위 교육기관 중 다섯은 미국, 넷은 중국, 하나는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들의 출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속서 3).

기술 분야별 PCT 출원을 살펴보면, 컴퓨터 기술이 전체 PCT 공개출원 중 8.7%를 차지했고, 디지털 통신(7.7%), 전기기계(7%), 의료기술(6.9%), 측정(4.7%)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위 10 위의 기술 분야들 중 반도체(+12%)와 컴퓨터 기술(+11.9%)이 2019 년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공개출원 기술 분야별 분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기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속서 4).

2019 년 출원 관련 최종 수치는 올해 중 추후에 PCT 뉴스레터를 통해(PCT 연보의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PCT 규칙 20.8(a 의 2) 및 (b 의 2)에 따른 상충사실의 통지

지난 2019 년 10 월 PCT 총회에서 2020 년 7 월 1 일부로 발효되는 새로운 규칙이 다수 채택되었습니다. 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 는 국제출원의 요소나 부분이 잘못 제출된 경우 올바른 요소나 부분을 제출하는 것을 다루기 위해 채택되었습니다(PCT 규칙 20.5 는 출원의 누락 부분을 제출하는 경우를 다룸). 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에 따라, 잘못 제출된 요소나 부분을 올바른 요소나 부분으로 교체하거나, 인용에 의한 보완을 통한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규칙은 아래의 경우를 다룹니다.

- 모든 출원일 요건이 충족된 날 또는 그 이전에 올바른 요소 및 부분 제출(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b))
- 모든 출원 요건이 충족된 날이 지난 뒤에 올바른 요소 및 부분 제출(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c))
- 선출원에 포함된 바와 같은 올바른 요소 또는 부분의 유효한 인용에 의한 보완(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d))

또한, 새로운 PCT 규칙 20.8(a 의 2)는 PCT 규칙 20.5 의 2(a)(ii) 및 20.5 의 2(d)가 수리관청의 국내법과 상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2019 년 10 월 9 일 현재, 규칙 20.5 의 2(a)(ii) 및 (d) 중 어느 하나가 수리관청의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수리관청이 2020 년 4 월 9 일까지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때에는, 해당 규칙이 해당 국내법과 상충하는 한 해당 규칙은 해당 수리관청에 제출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새로운 PCT 규칙 20.8(b 의 2)도 PCT 규칙 20.5 의 2(a)(ii) 및 20.5 의 2(d)가 국내관청의 국내법과 상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채택되었습니다.

"2019 년 10 월 9 일 현재, 규칙 20.5 의 2(a)(ii) 및 (d) 중 어느 하나가 지정관청의 국내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지정관청이 2020 년 4 월 9 일까지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때에는, 해당 규칙이 해당 국내법과 상충하는 한 해당 규칙은 해당 지정관청에 대하여 조약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해당 지정관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PCT 규칙 20.8(a 의 2)에 따른 통지

아래 국가의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청들은 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a)(ii) 및 20.5 의 2(d)가 해당 관청들의 국내법과 상충된다고, 그리고/또는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거나, 또는 유효한 상태인 PCT 규칙 20.8(a)에 따른 통지를 근거로 해당 상충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CL 칠레

CU 쿠바

- CZ 체코
- DE 독일
- FR 프랑스
- ID 인도네시아
- IT 이탈리아
- KR 대한민국
- MX 멕시코

나아가, 유럽 특허청은 해당 규칙들이 유럽특허협약(Convention on the Grant of European Patents, EPC)의 법적 틀과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PCT 규칙 20.8(b 의 2)에 따른 통지

아래 국가의 (지정관청의 역할을 수행하는) 관청들은 새로운 PCT 규칙 20.5 의 2(a)(ii) 및 20.5 의 2(d)가 해당 관청들의 국내법과 상충된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거나, 또는 유효한 상태인 PCT 규칙 20.8(b)에 따른 통지를 근거로 해당 상충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CL 칠레
- CN 중국
- CU 쿠바
- CZ 체코
- DE 독일
- ID 인도네시아
- KR 대한민국
- MX 멕시코
- TR 터키

나아가, 유럽 특허청은 해당 규칙들이 유럽특허협약의 법적 틀과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국제사무국에 통지했습니다.

이례적 IP 관청 휴무일

코로나 19 팬데믹 관련 상황 때문에, 국제사무국은 많은 PCT 관청들이 이례적으로 공식 업무를 위해 공중을 대상으로 열리지 않는다고 통지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PCT 규칙 80.5 에 의거하여,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관청에 도달해야 하는 서류 또는 수수료의 기한이 해당날짜 중 만료되는 경우, 해당 기한이 연장되어 해당 관청이 공식 업무를 위해 공중을 대상으로 다시 열리는 날인, 그 익일에 만료됩니다.

각 관청의 이례적 휴무 여부는 아래 "IPO 휴무일"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dc/closeddates/faces/page/index.xhtml

상기 페이지에는 국제사무국이 해당 관청으로부터 통지받은 휴무일만 나와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관청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력심사 시범사업 소식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7-08 호에 협력심사(CS&E)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IP5 관청들이 출원인의 구체적인 참여 요청에 따라 특정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및 견해서 작성에 함께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각 참여관청은 첫 해(2018년 7월-2019년 6월)에 주심기관(main ISA)으로서 약 50건의 국제출원을, 두 번째 해(2019년 7월-2020년 6월)에 이와 유사한 양의 국제출원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PCT 뉴스레터 2020/01 호에서, 대한민국 특허청과 미국 특허상표청이 시범사업 운영 두 번째 해에 주심기관으로서 이들 특허청에 접수되는 국제출원의 한도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양 특허청은 시범사업 참여 요청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

참여관청 소식

유럽 특허청

지난 PCT 뉴스레터 2018/07-08 호에서 유럽 특허청이 2019년 7월 1일부터 협력심사(CS&E) 시범사업에 신규 국제출원을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안내한 바 있는데, 이제 유럽 특허청은 시범사업 운영 두 번째 해에 주심기관으로서 해당 특허청에 접수되는 국제출원의 할당량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특허청은 시범사업 참여 요청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참여에 관심이 있는 출원인께서는 시범사업에서 주심기관으로서의 국제조사 수행 요청을 접수 중인 다른 국제조사기관을 통해 지금도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이때 해당 국제조사기관은 해당 출원에 대해 주심기관으로서의 조사를 수행할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협력심사 시범사업 관련 추가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십시오.

www.wipo.int/pct/en/filing/cse.html

PCT 정보 업데이트

국제조사 관련 조사료 및 수수료 (호주 특허청, 오스트리아 특허청, 캐나다 지식재산청, 유럽 특허청, 연방지식재산부(러시아연방), 인도 특허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대한민국 특허청,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2020 년 6 월 1 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이 수행하는 국제조사에 대하여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등가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	CHF
오스트리아 특허청	ZAR
캐나다 지식재산청	CHF
유럽 특허청.....	ZAR
연방지식재산부(러시아연방)	CHF, EUR, USD
인도 특허청.....	CHF, EUR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CHF
대한민국 특허청	CHF
국가산업재산기관(브라질).....	CHF, EUR

상기 변동사항은 수수료표 I(b)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D(AT, AU, BR, CA, EP, IN, KR, RU, SG) 업데이트)

보충적 조사료 (연방지식재산부(러시아연방),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2020 년 6 월 1 일부터, 연방지식재산부(러시아연방)와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에서 수행한 보충적 국제조사에 대해 스위스 프랑(CHF)으로 납부되는 금액이 수수료표 I(c)에 나온 바대로 변경됩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SISA (RU, SG) 업데이트)

국제예비심사 관련 수수료 (호주 특허청, 캐나다 지식재산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이스라엘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

2020 년 6 월 1 일부터, 다음의 관청들에 아래 명시된 통화로 납부되는 취급료 금액이 변경됩니다.

호주 특허청.....	AUD
캐나다 지식재산청	CAD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SGD
이스라엘 특허청	ILS

대한민국 특허청 KRW

상기 변동사항은 수수료표 II 에 나와 있습니다.

(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 E(AU, CA, IL, KR, SG) 업데이트)

신규 및 업데이트 PCT 자료

코로나 19 업데이트: PCT 시스템

코로나 19 상황에서 국제사무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안내하는 새로운 전용 웹페이지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wipo.int/pct/ko/covid_19/covid_update.html

해당 페이지에는 아래 내용에 대한 링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PCT 및 기타 WIPO 가 운영하는 IP 시스템에 따른 WIPO 의 업무 지속
- 국제사무국의 종이 문서 송부 중단 및 정보의 전자적 송부 필요성
-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PCT 하에서 취할 수 있는 해결책
- IP 관청들의 휴무일

추가 관련 정보가 안내되는 대로 새로운 링크들이 추가됩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사무국과의 종이 서류 송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제사무국에서 종이 서류 송부를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모든 10 개 PCT 공개언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영문 페이지 우측상단에서 언어 선택. 아래 한국어 페이지 참고).

www.wipo.int/pct/ko/news/2020/news_0008.html (한국어)

상기 "코로나 19 팬데믹이 PCT 출원 처리에 미치는 영향" 단락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ATENTSCOPE 소식

WIPO, 미국 국립보건원(NIH) 데이터베이스에 검색 가능한 화학식 수백만 개 제공

WIPO 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무료 화학 데이터베이스인 PubChem 에 1,600 만 개의 화학식을 제공하여 유효화합물(hit compound)들이 추가 스크리닝에 있어 우선시되도록 지원했습니다. PubChem 에서 WIPO 의 무료 데이터베이스인 PATENTSCOPE 에 바로 접속할 수 있어 화학정보학, 화학생물학, 의약화학, 신약개발(drug discovery) 등의 여러 연구분야에 대해 핵심 자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 InfoChem 과의 협업을 통해 PATENTSCOPE 가 미국 국립보건원의 화합물 검색을 지원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www.wipo.int/patentscope/en/news/pctdb/2020/news_0002.html

2020 년 4 월 26 일 세계 지식재산의 날: 녹색 미래를 위한 혁신

PCT 뉴스레터 2020/03 호에 안내된 바와 같이, 4 월 26 일은 예년처럼 세계 지식재산의 날이었습니다. 올해 테마인 "녹색 미래를 위한 혁신"은 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권을 녹색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의 핵심에 두는 것입니다.

직접 개발한 획기적인 친환경 혁신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혁신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미 취하신 경우에 한해 WorldIPDay@wipo.int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미래로 가는 길을 여는 데 혁신과 지식재산권이 수행하는 역할을 WIPO 와 함께 탐구해 보십시오.

세계 지식재산의 날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WIPO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ip-outreach/en/ipday/



PCT 특별기사

WIPO 매거진(2020/1 호)에 실린 아래 기사에 대한 링크가 PCT 홈페이지 내 "PCT 특별기사" 페이지에 추가되었습니다.

www.wipo.int/pct/en/news/pct_news.html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특허 동향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조력에너지 등의 재생가능 에너지원의 개발은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프리랜서 작가 제임스 노턴(James Nurton)은 재생가능 에너지 기술의 네 가지 주요 분야, 즉 태양에너지, 화학 반응으로 생성되는 전기(연료전지), 풍력에너지 및 지열에너지와 관련된 2002 년 이후의 PCT 공개출원 건수 추이를 분석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살펴봅니다.

WIPO 매거진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wipo.int/wipo_magazine/en/index.html

WIPO 매거진 2020/1 호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www.wipo.int/wipo_magazine/en/2020/01/

유용한 도움말

PCT 관련 문서의 서면 송부 및 수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

Q: 저는 지금까지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서면으로만, 또는 국내 수리관청에 이메일 주소 제공이 불필요한 전자 출원 시스템을 통해 PCT 출원을 해왔습니다. 이제껏 PCT 관련 통신을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만 받아 보았고 제 이메일 주소를 출원서 서식에 기재한 적이 없습니다. 국제사무국에서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우편을 통한 모든 통신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저의 진행중인 출원과 관련된 문서를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A: 현재 코로나 19 팬데믹이 국제사무국의 업무와 전 세계 우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출원인(또는 출원인의 대리인)께서는 PCT 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지 마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문서가 우편으로 도착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제사무국(수리관청의 역할을 하는 국제사무국 포함)에서도 PCT 관련 문서를 더 이상 우편으로 송부하지 않을 예정이니, 적절한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만 국제사무국과 통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계속 PCT 관련 통지를 받으시려면, 본인의 계속 중인 국제출원에 관한 통지를 수신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하루빨리 국제사무국에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는 그 방법을 몇 가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ePCT 를 통해 국제사무국으로 문서 업로드

아직 WIPO 계정이 없으시면 계정을 만들어 WIPO 의 ePCT 시스템에 로그인 한 후 국제사무국에 전자적 형식으로 문서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두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690 (계정 만들기)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820 (문서 업로드하기)

그리고 본인의 계속 중인 국제출원 중 하나에 대해 서한 한 통을 업로드하여 PCT 규칙 92 의 2 에 따른, PCT 통지를 보낼 이메일 주소의 기록을 요청하고, 이러한 변경이 같이 적용되는 나머지 출원들의 목록을 기재하십시오. 문서 유형으로 "(복수의 국제출원에 대한) 규칙 제 92 조의 2 에 다른 변경 청구서"를 선택하십시오.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 이용

아직 ePCT 시스템 로그인용 WIPO 계정을 만들지 않았거나 당장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아래에서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를 통해 국제사무국에 전자적(PDF) 형식으로 문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UploadDocument.xhtml?lang=ko> (한국어)

ePCT 에 대해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 사용시 비슷하게 본인의 계속 중인 국제출원 중 하나에 대하여, 이메일 주소의 기록이 함께 적용되는 나머지 출원들의 목록이 포함된 서한 한 통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는 종이 문서 송부의 유용한 전자적 대안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원래는 ePCT 시스템을 만에 하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대체적으로 이용되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비상용 업로드 서비스에는 ePCT 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이 없고,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상기 방법들 중 하나로 국제사무국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시면, 상황의 긴급함을 감안하여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 pct.eservices@wipo.int 또는 pct.infoline@wipo.int 로 이메일 송부
- 아래 WIPO(PCT) 고객용 "문의하기(Contact Us)" 페이지 이용

<https://www3.wipo.int/contact/en/area.jsp?area=pct>

향후 신규 국제출원을 제출할 계획이 있으시면, 출원서 서식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국제사무국,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이 해당 국제출원과 관련해 발행되는 통지를 해당 기관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메일 주소로 송부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해당 박스에 체크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출원서 서식 제 4 기재란).

그러나 최선의 방법은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이나 다른 관할 참여 수리관청에² 출원 시 ePCT 를 통해 국제출원을 제출하여 해당 출원이 해당 관청에 즉시 접수되고 우편 서비스상의 문제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 출원인의 국내 또는 지역 수리관청이 ePCT 출원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출원인은 누구나, 국가안보 관련 문제가 없다면, PCT 체약국의 거주자나 국민에 대한 관할 수리관청이 되는 수리관청으로서의 국제사무국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PCT 규칙 19.1(a)(iii)). ePCT 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지 않아도 되고, 국제사무국이 보유하고 있는 최신 참고 자료에 기반한 많은 검증 기능을 내장해 국제출원 시, 또는 사후 조치에 있어 오류를 방지하게 해줍니다. ePCT 외에 본인의 관할 수리관청에서 허용하는 다른 전자 출원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ePCT 를 통한 국제출원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 ePCT 도움말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169

PCT 관련 문서는 이메일로 송부될 뿐 아니라 ePCT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문서에 접근하려면, **해당 출원에 대한 이메일 주소를 국제사무국에서 기록하고 나서** 강력 인증을 설정하고 해당 출원에 대한 ePCT 접근권한(eOwnership)을 요청해야 합니다.

WIPO 계정을 생성하고 ePCT 를 처음 사용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PCT 온라인서비스 헬프데스크(PCT eServices Help Desk, pct.eservices@wipo.int)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출원의 국제공개 후에는 해당 출원에 대한 통지를 PATENTSCOPE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위해, 가급적 아래 내용들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² 참여관청 목록 확인: <https://pct.wipo.int/ePCTExternal/pages/EFilingServers.xhtml>

³ 대개의 경우 eOwnership 을 요청하면 서식 PCT/IB/345 를 통해 확인코드가 송부되어야 하므로, 이메일 통지 송부를 위해 이메일 주소가 사전에 기록되어 있어야 함.

- WIPO 우선권서류 전자적 이용 서비스(DAS) 이용하기. 해당 서비스를 통해 우선권서류를 전자적으로, 쉽게, 무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추가 내용은 PCT 뉴스레터 2019/11 및 12 호 참조).
- 자필서명이 아닌 전자서명 획득하기. ePCT 사용의 이점 중 하나는 외부서명 기능을 통해 서명을 전자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서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내용은 www.wipo.int/pct/en/epct/learnmore.html?N=992 참조).
- 전자적으로 수수료 납부하기. WIPO 는 WIPO 당좌계좌(WIPO Current Account) 대차(debit) 요청, (특정 상황시) 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또는 (유럽에 한해) 우편대체 송금(postal transfer)으로 납부된 수수료만 수령합니다.

국제사무국에서 송부한 통지의 수신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 "국제사무국과의 전자적 통신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wipo.int/pct/ko/covid_19/communication.html (한국어)

국제사무국은 PCT 에 따른 국제기관들을 포함한 PCT 국내관청 및 지역관청들도 가급적 ePCT 나 전자데이터교환(EDI) 같은 전자수단을 통해 국제사무국과 통신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PCT 뉴스레터 2020 년 3 월호(2020/03 호) "유용한 도움말"에 (현 코로나 19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초래되는)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PCT 에 따른 기한을 놓친 경우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 소식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는 영문판(<http://www.wipo.int/pct/en/newslet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CT 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시범사업

신규 일방향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사업 (노르웨이, 중국)

PCT 정보 업데이트

여러 수수료 변동 (호주 특허청, 캐나다 지식재산청, 기업및지식재산위원회(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이슬란드 지식재산청,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노르웨이 산업재산청)

BR 브라질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DK 덴마크 (국가안보 관련 규정, 임시 보호(provisional protection), 대리인 관련 요건, 미생물 및 기타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

IN 인도 (전화번호, 수수료)

PL 폴란드 (이메일 주소, 필요한 사본 수)